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670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외국 법인 등의 자료 제출 신설 (이인선의원안)	3

I. 개요

1. 이인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467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인선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4. 10. 11.
- (3) 회 부 일 : 2024. 10. 1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형 글로벌 빅테크의 조세회피로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특히, 한국재무관리학회에 따르면, 구글의 연간 국내 매출액은 최대 12조 원 이상으로 추산되나, '24년 4월에 공시된 구글코리아 감사보고서의 지난해 매출액은 3,653억 원에 불과하며, 구글이 국내에 납부한 법인세 155억 원은 네이버 법인세 4,964억 원의 32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 실정임.

국내 시장에서 글로벌 빅테크의 점유율 및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납부하는 법인세가 극히 낮은 상황을 타개할 제도적 근거가 전무한 상황이며, 현행 세법상 글로벌 빅테크의 정확한 매출을 파악할 근거도 부재한 실정임.

이에 대형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사업 구조 및 매출이 정확히 규명

되어야 정확한 과세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정규모 이상 외국법인의 사업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94조의2제4항 신설 등).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외국 법인 등의 자료 제출 신설 (이인선의원안)

현 행	이인선의원안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자료제출의무(제94조의2) ○ 대상: 연락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 ○ 시기: 다음 연도 2월 10일 ○ 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황자료 및 매입처별 합계표 * 시행령에서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기본 사항, 외국 본사현황 및 국내 다른 지점 현황, 국내거래처 현황 등을 규정할 계획임 ○ <신 설>	☐ 제출 대상 및 내용 추가 ○ (현행과 같음) ○ 대상: 국내사업장의 유무와 관계없이 전 세계 매출 30조원 이상의 외국법인 ○ 시기: 다음연도 2월 10일 ○ 내용: 법인명 등의 현황자료 ○ 시행일: 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이인선의원안 2024. 10. 11. 발의 (의안번호 4670)

☐ 개정안은 현행법상 자료제출의무가 있는 외국법연락사무소¹⁾와 더불어 자료제출 대상에 국내사업장의 유무와 상관없이 매출 기준 30조 원 이상의 외국법인을 추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외국법연락사무소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법인이 국내에 국내사업장²⁾이 아닌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도 해

1) 외국본사를 위해 광고, 선전,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 예비적·보조적 활동 수행

2)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로서 현행법 제94조에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09조제2항은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되었을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국내사업장 설치신고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당 사무소에 대한 현황자료를 매년 2월 10일³⁾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조세조약의 일반 원칙⁴⁾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유무에 따른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고정사업장 여부의 판별이 어려운 연락사무소를⁵⁾ 대상으로 사무소 현황 자료 및 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가 있음.⁶⁾

□ 개정안은 이에 더해 국내사업장의 유무와 관계없이 전 세계 매출액 30조 원 이상의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①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등 일반현황 ② 국내에서 발생하는 매출 등 재무현황 ③ 국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역, 거래 건수, 거래 금액 등 서비스 제공 현황 ④ 그 밖에 법인의 사업 현황 파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현황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 이는 일반적으로 상기 매출 기준에 부합하는 글로벌 빅테크의 정확한 매출을 파악하여 세원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디지털세(Digital Tax)⁷⁾ 도입 취지와 관련성이

3)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 기한과 동일하게 규정

4) OECD 모델 제7조는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고정사업장이 있으면 그에 귀속되는 순소득을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이 독립기업 원칙에 따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 「법인세법」 또한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와의 조세조약 체결국의 법인인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국내에서 과세가 가능하며,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 귀속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를 하지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각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함.

5) 현재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에 설치신고 및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의 고유번호 발급절차만을 정하고 있어 해당 연락사무소가 실질적으로 고정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임. 또한 연락사무소는 업무연락·광고·정보수집 등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만을 수행하고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법인세 등 세제 신고 및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지고 있지 않으므로, 실질이 국내사업장임에도 연락사무소로 등록하여 조세회피를 하려는 사례가 발생함.

6) 「법인세법 검토보고서」,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2021년 .2022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디지털세란 기업이 디지털 형식으로 제품을 판매해 수익을 얻으면 사업장 소재지와 상관없이 해당 국가가 일정 세율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의 조세로, 디지털 경제가 처음 등장하던 1990년대 초반에는 OECD의 전통적 고정사업장 개념이 유지되었으나, 코로나19등을 거치며 미국 IT 기업들의 성장이 두드러지며 고정사업장을 중심으로한 세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에서 등장한 개념임.⁸⁾ 이를 통해 BEPS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의 Pillar 1 에 따른 거대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초과이익의 일정부분에 대해 각 나라별 매출에 따라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제도의 도입 논의도 진행 중임.⁹⁾
- 개정안은 이러한 배경 하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점유율 및 매출액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법인세 납부액이 극히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정확한 매출을 파악할 수 있도록 법인의 현황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글로벌 빅테크의 효율적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조세채권의 일실을 최소화하려는 입법취지가 있음.

7) 캐나다는 사용자에게서 연간 2000만캐나다달러(약 198억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정보기술(IT) 기업이면 전 세계 수익이 일정액을 초과하면 캐나다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3%를 부과하는 디지털세제를 도입하였음. 이다. 튀르키예는 온라인 광고·콘텐츠 판매·SNS 서비스 기업에 대해 튀르키예 내 매출 7.5%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으며, 인도는 디지털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기업에 수익 대비 6%를 부과하는 '디지털세'를 도입한 상태임

8) BEPS Action 7 Final Report: OECD, Preventing the Artificial Avoidance of Permanent Establishment Status (2015)

9) 구체적으로 연매출이 200억유로 이상이고 이익률이 10%를 넘는 대기업이면 초과이익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 발생국에 세금으로 납부하는 방안

특히 2023회계연도 매출 기준으로 일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경우 국내 법인의 영업이익률이 글로벌 전체 영업이익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서, 영업이익의 축소 신고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해당 기업들은 디지털 광고 매출액 상당수를 외국 등으로 이전하고 있다고 의심되므로 개정안과 같이 현황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각 기업의 실질적인 영업이익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따라 상기 기업들이 현황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실질적인 과세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세원 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Multilateral Convention to Emplement Tax Treaty related)’을 비준하고 BEPS 프로젝트 참여국으로서, OECD의 「해외금융거래 관련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에 따라 세무당국에 국가별 보고서등의 자료 제출 요구¹⁰⁾에 관한 사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¹¹⁾ 이에 따라 최종모회사가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

10) 「BEPS 대응 프로젝트 이행과제 Action 13」은 다국적 기업에 이전 가격 관련 내용을 문서화하고 이를 과세당국에 보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문서와 관련하여 개별기업보고서(local file), 통합 보고서(master file) 및 국가별 보고서(Country by Country report) 등 세 가지 유형의 이전 가격 문서를 작성·보관할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별 보고서는 제출 받은 과세당국이 다른 과세당국과 정보교환을 통해 공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는 그 구분에 따라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 등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이하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라 한다)를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출액 및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2.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 국가별보고서

액이 7억 5천만 유로 (상당액)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 관계회사’는 국가별 보고서¹²⁾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¹³⁾

- 개정안에서 현황자료의 제출대상에 추가하고자 하는 ‘국내사업장의 유무와 관계없이 전 세계 매출 30조원 이상의 외국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포함되며, 그 차이는 ① 현황자료 제출 주체(모외국법인(개정안),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 관계회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② 자료 제출 방식(법인별 제출(개정안), 국내에 위치한 관계회사의 단일 국가별 제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임.¹⁴⁾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 예시하고 있는 ①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등 일반현황 ② 국내에서 발생하는 매출 등 재무현황은 현재 이미 제출되고 있는 국가별 보고서를 통해 일부 파악이 가능한 상황임.

한편, 국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역, 거래 건수, 거래 금액 등 서비스 제공 현황을 제출하더라도 관련 자료를 근거로 실질적인 세금 징수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OECD 모델 조세조약 제7조는 사업소득에 대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거주국에서 과세하고,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에 귀속되는 순소

12) 국가별 보고서란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가별 수익 내역, 국가별 납부세액, 국가별 주요사업활동등을 포함하고 있음.

13)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FAQ, 국세청, 2023.11.

14) 다만, 개정안은 외국법인이 각 호에서 정하는 현황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되, ‘그 밖에 법인의 사업 현황 파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등’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상에 위임되어 있어, 자료 제출 방식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임.

득을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이 독립기업원칙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고 있어 시장소재지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세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관련 현황자료를 파악하더라도 다국적기업의 기업 운영 전략 등에 따라 실질적인 과세로 귀결될 확률은 높지 않을 수 있으므로,¹⁵⁾ 디지털세 도입 등 입법적 보완 방안을 고민할 필요성이 있음.

문 의 처

02)6788-5158

15) 디지털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해 시장소재지국의 과세권을 부여해야만 개정안에 따라 실질적인 과세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일례로 디지털 기업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온라인 광고 매출 수입등을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예:싱가포르)의 매출액으로 산정하더라도 고정사업장이 없는 시장소재지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세권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개정안에서 예시한 현황자료를 근거로 과세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